

행정심판 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
청구인	성명			
	주소		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
	전화번호			
[] 대표자 [] 관리인 [] 선정대표자 [] 대리인 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[]만 작성합니다.	성명			
	주소		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
	전화번호			
피청구인				
소관 행정심판위원회		[] 중앙행정심판위원회 [] ○○시·도행정심판위원회 [] 기타		
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				
처분이 있음을 안 날				
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		별지로 작성		
처분청의 불복절차고지유무		[] 유 [] 무		
처분청의 불복절차고지내용				
증거 서류				
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여부		[] 여 [] 부 ※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 27 호의 2 서식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		
구술심리 신청 여부		[] 여 [] 부 ※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 39 호서식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를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		
「행정심판법」 제 2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				
○○행정심판위원회 귀중				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				

첨부서류	1. 대표자, 관리인,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(대표자, 관리인,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국선대리인 제도 안내

1. 제도개요

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신청자격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

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5 조 및 제 5 조의 2 에 따른 지원대상자

다. 「기초연금법」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
라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수급자

마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보호대상자

바.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
3. 신청절차

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 27 호의 2 서식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 출해야 하며,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구술심리 제도 안내

1. 제도개요

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. 다만,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합니다.

2. 신청절차

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「행정심판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 39 호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신청해야 합니다.

처리 절차	
청구서 작성 → 접수 → 재결 → 송달 청구인 ○○행정심판위원회 ○○행정심판위원회	